

2023년 SPA형사소송법 전면개정판 정오표(1쇄기준)

[1권]

P.66

하단, (5) ❶ 아래에 추가

- ❶ 최근 검경수사권 재조정에 의해 검사의 제1차적인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축소되었다.
검사의 직접수사 가능범죄로는 '부패범죄'와 '경제범죄'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(공직자범죄, 선거범죄, 방위사업범죄, 대형참사범죄 등 4개 범죄는 직접수사대상에서 제외됨),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, 위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**직접 관련성**이 있는 범죄이다(검찰청법 제4조 제1항). <2022. 9. 10. 시행>
- ❶ 다만, 선거범죄는 2022. 12. 31.까지는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가능(검찰청법 부칙 제3조)
- ❶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 다만,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(검찰청법 제4조 제2항). 이 규정은 **이 법 시행 이후 공소제기하는 경우부터** 적용(검찰청법 부칙 제2조). <2022. 9. 10. 시행>

p.71

하단, ③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**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**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(제245조의 7 제1항) ⇨ ③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(**고발인은 제외**)은 해당 **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**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(제245조의 7 제1항). ▶ 2022. 9. 10.부터 시행되며,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

p.74

상단, 박스 아래에 추가

㉞ 송치요구사건의 수사범위

검사는 시정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송치요구(제197조의 3 제6항), 위법하게 체포·구속된 자에 대한 송치명령(제198조의 2 제2항),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송치(제245조의 7 제2항)에 의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사건과 **'동일성'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** 수사할 수 있다(제196조 제2항). ▶ 2022. 9. 10.부터 시행

p.88

문8번 ㉡ ⇨ ㉢

p.161

⑧~ 진정성립의 증명(제312조 제2항)~ ⇨ ⑧~ 진정성립의 증명(제312조 제4항)~

P.162

상단, 관련판례 ‘▶부분’을 아래 내용으로 교체

▶ 예외 :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일정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음(제2권 P.116 참조)

p.228

하단, ‘ ~ **검사**도 구속취소가 가능하며, **사법경찰관**도 검사의 지휘에 의해 가능하다.’

⇨ ‘ ~ **검사와 사법경찰관**도 구속취소가 가능하다.’

[2권]

p.116

5. 7줄 아래에 ▶추가

▶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‘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’ 부분 가운데 **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**(헌재결 2021.12.23, 2018헌바524).

p.194

판례 4. ~ 고객일 라고~ ⇨ ~ 고객일 뿐이라고 ~

p.239

㉠㉡

‘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신문조서나 참고인진술조서의 ~’ ⇨ ‘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은 참고인진술조서의 ~’

p.427

(1) ㉡ ‘향고의 제기방법 : 향고는 ~ 3일이지만 ~’ ⇨ ‘향고의 제기방법 : 향고는 ~ 7일이지만 ~’

p.431

(4) 불복

‘준항고 결정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가지고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(제419조, 제415조)’ ⇨ ‘준항고 결정에 대해서 별도의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, 그 자체가 바로 재항고의 대상이 된다.’

p.443

판례 2. 아래 ▶비교판례 추가

▶ 비교판례

피고인이 간통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2008. 10. 30. 합헌결정을 하였다가 2015. 2. 26. 위헌결정을 하게 되자 재심을 청구한 경우, 형법 제241조가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종전 합헌결정일의 다음 날인 2008. 10. 31.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공소사실을 심판하는 제1심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(대판 2019.12.24, 2019도15167).